

제 1399 호
1988. 2. 22

발행인: 서울특별시 김 용 래
 편집인: 공 보 온 서 정 회
 인 쇄: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 화: 731-6111-3
 전 화: 735-3337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2281 호 : 서울특별시지방행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 3

제 2282 호 :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27

제 2253 호 : 서울특별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 27

제 2284 호 : 서울특별시군장성 소유자동차의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28

◎ 규 칙

제 2212 호 : 서울특별시택지가격평가심의화실시운영규칙중지급칙 30

제 22.3 호 : 서울특별시군장성급소유자동차외국산자동차에관한특별조례시행
규칙중폐기규칙 30

(이면 계속)

이 면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강한다.

서울특별시

◎	고 시	
	제 117 호 : 쇠고기 및 돼지고기 원동가격	31
◎	공 고	
	제 123 호 : 제 2 종전기공사업면허업제영업정지처분	31
	제 129 호 : 제 2 종전기공사업면허업제면허취소처분	31
	제 132 호 :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완료	32
	제 133 호 : 전기용품허가취소처분	32
◎	구 공 고	
	관악구제 10 호 : 관인개각사용승인	33
	중랑구제 6 호 : 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	34
◎	사 령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지방별장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중 제
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8년 2월 22일

서울특별시장 김용래

◎서울특별시조례제 2281호

서울특별시지방별장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지방별장직공무원 인사관
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

1. 행정관리분야

직명(위 임부구분)	계급	작무내용	임용자격	비고
시정 연구관	2,3급 상당	시정연구, 정책 개발 제도 개선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 서 국·공립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 국기관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 5 년 이상인 자 3.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국·공 립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 7년이 상인 자 4. 기타 임용권자가 제적자라고 인 정한 자	

직명(위) 업무구분	계급	직무내용	임용자격	비고
기술 심사관	2,3급 상당	각종 공사설계 감리총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공학, 토목공학, 도로공학, 도시공학등 관련분야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3년이상 해당분야 경력 이 있는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국·공립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서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 5년이상인 자 3.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국·공립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서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 7년이상인 자 4. 기타 임용권자가 적격자로 인정 한 자 	
자료분석 요원	6급 상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산편성 자료의 정리 2. 예산집의안 작성(차트, 도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4년제대학 졸업자로서 경력 2년 이상인 자 2.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조사, 설계, 도안) 4년이상 근무경력 이 있는자 3.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6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자 	

직 명 (위) 임 무 구 분	계 급	직 무 내 용	임 용 자 격	비고
인 력 진 단 원	6 급 상 당	· 기구 및 정원 자료의 편철, 보존 · 기관별 정현원 현황 조사 · 특정부서의 업 무량분석	1. 4년제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에 상응하는 근무경력 2년이상인 자 2.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에 상응하는 근무경력 4년이상인 자 3. 고등학교이상 졸업자로서 관련분 야에 상응하는 근무경력 6년이상 인 자 4. 인력진단원(7급상당)으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자	
	7 급 상 당	· 기구 및 정원 자료의 편철, 보관 · 특정부서의 업 무량 조사 분 석	1. 4년제대학 행정학과, 경영학과등 관련분야 졸업자 2.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당해분야에 상응하는 근무경력 2년이상인 자 3.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당해 분야에 상응하는 근무경력 4년이 상인 자	
자 로 조 사 원	6 급 상 당	· 연구조사서의 원고 · 보고서 작성 (차트, 도안)	1. 4년제대학 졸업자로서 경력 2년 이상인 자 2.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당해분야에 상응하는 근무경력 4년이상인 자 3. 고등학교이상 졸업자로서 당해분 야에 상응하는 근무경력 6년이상 인 자	

직 명 (위) 업무구분	계 급	직 무 내 용	임 용 자 격	비고
해외자료 조사원	7 급 상 당	· 해외자료 조사	1. 4년제대학 졸업자로서 외국어불 제공 또는 부전공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당해분야 경 력 2년이상으로 외국어에 능통한 자 3. 고등학교이상 졸업자로서 당해분 야 경력 4년이상으로 외국어에 능 통한 자	
도시개발 자료 조사원	6 급 상 당	· 시정종합자료실 운영 - 시정자료 열 람보존 - 각종자료 수 집보관	1. 4년제대학의 도서관학과 졸업자 로서 당해분야 경력 2년이상인 자. 2. 경사서 자격증소지자로 당해분야 경력 2년이상인 자	
시 사 원 찬원	6 급 상 당	서울시사 자료 수집보관	1. 4년제대학 사학과 또는 국사학 과 졸업자로서 당해분야 경력 2 년이상인 자 2. 4년제대학 사학과 또는 국사학 과 졸업자로서 석사학석이상 취득 한 자 3. 경사서 자격증소지자로서 당해분 야 경력 2년이상인 자	
통 계 조사원	7 급 상 당	시정에 필요한 각종 통계 조사 업무	1. 4년제대학 통계관련학과 졸업자 2. 전문대학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2년이상 실무경력자 3. 고등학교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4년이상 실무경력자 4. 일반직 8급 또는 별정직 8급상당 이상으로 2년이상 통계업무 경력 자	

2. 문화 예술분야				
직명(위) 및 업무구분	계급	직무내용	임용가격	비고
새중문화회관 사무국장	3급 상당	회관업무 전반적 운영관리 에 관한 관장 보좌	1. 관련분야 석사학위이상 학위소지 자로서 ○ 행정경력 10년이상인 자 ○ 문화예술 및 공연업무경력 5년 이상인 자 2. 4년제대학 졸업의 학력소지자로서 ○ 행정경력 15년이상인 자 ○ 문화예술 및 공연업무경력 7년 이상인 자 3. 기타 임용권자가 적격자로 인정 한 자	
공보관 홍보계획 담당관	4급 상당	• 시정공보, 계획 수립 조정 • 각종 홍보자료 제작 통제	1.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 5년이상인 자 2. 언론, 홍보분야 부장급 이상으로 서 5년이상 경력자 3. 기타 임용권자가 적격자로 인성 한 자	
무대공연 담당관	4급 상당	• 국제문화 예술 교류 • 무대 예술진흥 • 진흥예술 단체 운영 관리	1. 4년제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 행정경력 10년이상인 자 ○ 문화예술 및 공연업무경력 7년 이상인 자 2. 기타 임용권자가 적격자로 인정 한 자	
공연계장	5급 상당	• 공연 및 대관 계약 수립진행	1. 4년제대학 졸업자로서 문화예술 및 공연업무경력 5년이상인 자 2. 행정경력 5년이상인 자 3. 기타 임용권자가 적격자로 인정 한 자	

직명(위) 및 업무구분	계급	직무내용	임용자격	비고
무대계장	5급 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대장치 및 부속설 운영관리 무대운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4년제대학 졸업자로서 문화예술 및 공연업무경력 5년이상인 자 행정경력 5년이상인 자 기타 임용권자가 적격자로 인정할 자 	
운영계장	5급 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원예술단체 운영관리 예술단체 자체 계획수립 및 제작공연 	<ol style="list-style-type: none"> 4년제대학 졸업자로서 문화예술 및 공연업무경력 5년이상인 자 행정경력 5년이상인 자 기타 임용권자가 적격자로 인정할 자 	
무대공연 담당	6급 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속예술단체 운영 공연물제작 및 진행 	<ol style="list-style-type: none"> 4년제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문화예술 및 공연업무경력 2년이상인 자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행정경력 6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7급 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속예술단체운영 공연물제작 및 진행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2년이상 유경험자 관련학과 출신자 	
문화재요원	5급 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의 관리 항토문화의 보존연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4년제대학 문화재관련학과(사학, 국사학, 고고학, 미술학, 인류학, 서지학, 공예학) 졸업자로서 문화재관련분야 5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문화재요원(6급상당)으로 3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석사학위소지자로서 근무경력 2년이상인 자 기타 임용권자가 적격자로 인정할 자 	

직명(위) 및 업무구분	계급	직무내용	임용자격	비고
	6급 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의 관리 • 향토문화의 보존연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분야 관련 학사학위소지자로서 문화재 관련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문화재 2년이상 취급경력)이 있는 자 2. 고등학교이상 졸업자로서 문화재 관련분야 6년이상 근무경력(문화재 6년이상 취급경력)이 있는 자 	
영화제작 감독	5급 상당	시정홍보영화제작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4년제대학 연극영화과 졸업자로서 영화제작분야 5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2. 전문대학 영화연극과 졸업자로서 영화제작분야 7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영화제작분야 10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4. 영화 및 VTR 편집요원(6급상당)으로 3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영화 및 VTR 편집요원	6급 상당	영화제작, VTR 제작의 편집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4년제대학 연극영화과 졸업자로서 영화제작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 또는 VTR분야 교육이수자 2. 전문대학 연극영화과 졸업자로서 영화제작분야 4년이상 근무경력 또는 VTR분야 교육이수후 2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영화제작분야 5년이상 근무경력 또는 VTR분야 교육이수후 5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직명(위) 및 업무구분	계급	직무내용	임용자격	비고
영화조정기사 (영화기사)	7급 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사기조정 - 행사, 회보, 교육시 - 영화사사 - 홍보영화의 순회공연 	1. 영사기사 면허중 소지자로서 영사기조정 2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프로그래머	7급 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명컴퓨터시스템조정 • 조명설계 및 색지배합조정 • 조명기기관리 	1. 4년제대학 관력학과 졸업자로서 해당분야 5월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2. 고등학교이상 졸업자로서 해당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비상대비 업무분야				
인방위국장	2-3급 상당	비상사태에 대한 재반체휘 수립 및 비상훈련	1. 전역 3년미만 전투병과(보병, 포병, 기갑, 공병, 통신) 출신 장교로서 ○ 예비역중령이상 - 2급상당 ○ 예비역소령이상 - 4급상당 ○ 예비역대위이상 - 5급상당	
비상제회과장	4급 상당			
제회, 운영 담당 또는 계장	5급 상당			
한강안전관리대장 (안전계장)	5급 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강훈련 및 비상훈련, 장비관리 • 발위소집자 교육훈련 • 도강시설 및 장비관리

직명(및 업무구분)	계급	직무내용	임용자격	비고
민방공 경보통제 소장	5급 상당	· 민방공경보전 파 · 공군기술항공 통제소를 비 롯한 유관기 관의 협조	1. 전역 3년미만인 자로서 통신장교 (대위이상) 출신자 2. 기타 임용권자가 적격자로 인정 한 자	
한강안전 관리대원	6급 상당	· 도강훈련 및 비상훈련장비 관리 · 방위소집자 교 육훈련 · 도강시설 및 장비관리	1. 육군 및 해군출신장교로서 예비 역 중위이상 2. 한강안전관리대원(7급상당)으로 2년이상 근무한 자	
	7급 상당	· 진급도강시설 및 장비(바 지)관리 · 방위소집자 교 육훈련 및 관 리	1. 육군 및 해군의 예비역 중위 이 상 2. 한강안전관리대원(9급상당)으로 서 3년6월이상 근무한 자	
	9급 상당	· 진급도강시설 및 장비(바 지)관리 · 방위소집자 교 육훈련 및 관 리	1. 육군 및 해군의 예비역 상병이 상 실역을 필한자로서 2. 선박, 차양 또는 증장비분야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1년이상 근 무경력이 있는 자	

직명(위) 업무구분	제급	직무내용	임용자격	비고
예비군 대대장	5급 상당	· 시청 직장에 기 군 관리 · 직장방위 및 부 장소요 진압	1. 육군 전투병과 또는 해군의 해병과 출신의 예비역 영관급 장 교 2. 위 "1" 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 을 때에는 육군전투병과 또는 해 군의 해병과 출신의 퇴역 영관 급 장교	항포악 비군선 칙법 시행규 칙제10 조
화생방 지도관	5급 상당	· 서울시 화생방 보호 · 서울시 민방위 의달 훈련	1. 육군의 화학 및 전투병과 출 신의 예비역 대위이상(해군의 해 병과 포함) 2. 화생방지도원(6급상당)으로 3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자	
화생방 지도원	6급 상당	· 서울시 및 구 청 화생방 보 호 · 서울시 및 구 청 민방위의 달 훈련	1. 육군의 화학 및 전투병과의 예 비역 중위이상 또는 이와 동등 한 군무원 출신(해군의 해병과 포함) 2. 화생방지도원(7급상당)으로 2 년이상 근무한 자	
	7급 상당	· 서울시 및 구 청 화생방보 호 · 서울시 및 구 청 민방위의 달 훈련	1. 육군의 화학 및 전투병과의 예 비역 장교 또는 이와 동등한 군 무원 출신(해군의 해병과 포함)	

직 명 (위) 업무구분	계급	직 무 내 용	임 용 가 격	비 고
비상재회 과 비상 대비인력	6 급 상 당	비상사태에 대 한 재반계획 수 립 및 비상훈 련	1. 전역 3년미만 전부병과 (보 병, 포병, 기갑, 공병출신) 출신장 교로서 예비역 중의이상 2. 일반직 7급 또는 현정직 7 급상당 이상으로 3년이상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자	
민 방 공 경보통제 요 원	7 급 상 당	민방공 경보장 비 유지관리	1. 전기 또는 통신분야 5년이상 종사자 2. 전기 또는 통신기능사 2급이 상 취득자 3. 농업계고등학교 전기 또는 통 신 관련학과 졸업자	
기상요원	7 급 상 당	기상예보 파악 및 상황기록, 유지 및 전파	1. 4년제대학 기상학과 졸업자 2.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로서 당역 분야 근무경력 2년이상인 자 3. 고등학교이상 졸업자로서 당역 분야 근무경력 4년이상인 자 다만, 교육목중 기상학을 이수한 자는 근무경력 기준에서 1년을 감한다.	
예 비 군 대대 행정 요원	7 급 상 당	· 시청 직장에 비군 관리 · 직장 민방위 대원 관리	1. 육군 예비역 장교 출신자로서 경력자 2. 고졸이상 병력을 필한자로서 경력 4년이상인 자.	
예 비 갑 소 및 장	6 급 상 당	수환지 직장에 비군 관리등	1. 육군 전부병과 또는 예병출신 위관급 장교(보병, 포병, 기갑, 공병, 통신)	함도에비 군설치업 시행규칙 제 10 조

4. 전산분야				
직명(위) 업무구분	계급	직무내용	임용자격	비고
전산 처리사	6급 상당	전산화 개발업 무 분석	1. 4년제대학 전산학과 졸업자로서 2 년이상 실무경력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처리기 사 1급 취득자로서 당해분야 경력 2년이상인 자 3.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로서 6월이상 전산교육, 4년이상 근무경력 있는 자 4. 일반직 7급 또는 별정직 7급상당 이상으 로 2년이상 전산업무 경력이 있는 자	
	7급 상당	· 전산화 개발 업무분석 · 전산화 시스 템 설계 · 프로그램 작 성 및 전산 처리	1. 4년제대학 전산관련학과 졸업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처리기사 1급자격증 소지자 3. 전문대학 당해분야 졸업자로서 6월 이상 전산교육을 이수하고 당해분야 경력 2년이상인 자 4. 일반직 8급 또는 별정직 8급상당 이 상으로 2년이상 전산업무 경력자	
	8급 상당	전산화 시스템 설계에 따른 프로그램 작성 및 전산처리	1. 전문대학이상 전산관련학과 졸업자 2. 전문대학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6월 이상 전산교육을 이수한 자 3. 고등학교이상 졸업자로서 6월이상 전 산교육을 이수하고 당해분야 실무경력 2년이상인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처리기사 2급자격증 소지자 5. 일반직 9급 또는 별정직 9급상당 이 상으로 1년 6월이상 전산업무 경력자	
기 제 처리사	6급상당	전자계산기 조작	· 전산처리사 (6급상당) 과 동일	
	7급상당	전자계산기 조작	· 전산처리사 (7급상당) 과 동일	
	8급상당	전자계산기 조작	· 전산처리사 (8급상당) 과 동일	

직명(위 업무구분)	계급	직무내용	임용자격	비고
전산전기 기사	8급상당	전산실 동력 시설 유지관리	1. 전문대학 전기과 졸업자 2. 고등학교 전기과 졸업자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전기기사 2급 및 전기기능사 2급,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전산기계 기사	8급상당	전산실 환온, 환습시설 유지 관리	1. 전문대학 기계과 졸업자 2. 고등학교 기계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기계기사 2급 및 열관리기능사 2급,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전산통신 기사	6급상당	통신시설 유지 관리	1. 4년제대학 통신관련학과 졸업자로 서 2년이상 실무경력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데이터 통 신설비기능사 및 기사 1급이상 자 격증 소지자 3. 전문대학이상 통신관련학과 졸업자 로서 4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일반직 7급 또는 별정직 7급 상당으로 2년이상 당해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전공원	7급상당	·전공점사 업무감독 ·전공실 관리	1. 전공분야 4년이상 근무경력이 있 는 자 2. 8급상당으로 2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직명(위) 업무구분	계급	직무내용	임용자격	비고
	8급상당	천공점공업무	1. 천공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2. 천공원(9급상당)으로 1년6월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9급상당	천공점공업무	1. 고등학교이상 졸업자로서 당해 분야 교육 3월이상 수료자 2. 천공분야경력 6월이상인 자	
5. 부녀청소년원, 아동복지분야				
직명(위) 업무구분	계급	직무내용	임용자격	비고
부녀 상담원	6급상당 (수석 상담원)	·부녀자상담 처리 ·부녀상담원 의 업무지 도 감독	1. 4년제대학 졸업자로서 사회사업 에 관한 영정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교 사로서 4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3.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4년이상 사회사업학울 전공하였거나 정규대학 과정을 이수 한 자 4. 부녀상담원(8급이상)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급상당 (일반, 상담원, 가정부녀자 운락시설 상담원)	·요보호여성 의 선도보호 ·가정부녀자 의 선도보호 ·문제가정의 상담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2년이상 사회사업학울 전공하였거나 정규대학과정을 이수한 자 2. 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교사 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 는 자 3. 부녀상담원(9급상당)으로 1년6 월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직명(위) 업무구분	계급	직무내용	일용자격	비고
	9급상당 (일반 상당원)	· 요보호여성 의 선도보호 · 가솔부녀자 의 선도보호 · 문제가정의 상담	1. 사회사업에 관한 행정의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사회사업종사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 3. 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가정 상담원	6급상당 (수석 상담원)	· 가정상담업 무의 개발 연구 · 가정상담원 의 업무 지도감독	1. 4년제대학의 사회사업학과, 심리 학과, 교육학과, 사회학과 또는 번 물학과 졸업자로서 사회사업에 관 한 행정의 2년이상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자 2.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졸업자로서 사회사업에 관한 행정의 4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가정상담원(8급이상)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급상당 (일반 상담원)	· 가정문제 연구조사 · 가정문제 상담	1. 4년제대학의 사회사업학과, 심리 학과, 교육학과, 사회학과 또는 번 물학과를 졸업한 자 2.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 졸업자로서 사회사업에 관한 행정의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계명(위) 및 업무구분	직 급	직무내용	임 용 자 격	비 고
아동상담소 장	5급상당	· 아동상담소 운영관리 · 아동복지 지도원감독	1. 4년제대학의 사회사업학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과의 학사학위소지자로서 아동복지 및 청소년지도분야 경력 5년이상인 자	아 동 복지법 시행령 제 3 조
청소년사업관 장	5급상당	· 청소년사업 관운영관리 · 청소년문제 지도, 감독	1. 4년제대학의 사회사업학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과의 학사학위소지자로서 아동복지 및 청소년지도분야 경력 5년이상인 자	
아동복지지도원 (청소년지도원)	6급상당	· 아동및임산부의상담 · 아동의일시보호 · 수용아동및 보호아동의 조사지도 · 청소년문제 지도감독	1. 당해분야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 2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2.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시행하는 아동복지지도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청소년지도원(7급상당)으로 2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4. 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4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7급상당	"	1. 당해분야 관련학과 학사학위소지자 2.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청소년지도원(8급상당)으로 2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2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직명(위) 및 업무구분	계급	직무내용	임용자격	비고
	8급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및 입산부의 상담 · 아동의 일시 보호 · 수용아동 및 보호아동의 조사지도 · 청소년 문제 지도감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2년이상 당해분야 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년이상 사회사업에 관한 경험이 풍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보건사회부 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상담원장	6급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문제 상담 · 청소년 문제 조사지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4년제대학 졸업자로서 사회사업에 관한 경험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4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상당원(7급이상)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지도교사	7급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교육 및 생활지도 · 부녀, 가정문제 상담지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4년제대학 졸업자로서 사회사업에 관한 경험에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2년이상 당해분야 관련 학과를 전공하였거나 경력이 있는 자 3. 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2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4. 상당원, 지도원(8급상당)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전문대학이상 체육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체육지도교사에 한함) 	

직 명 (위) 및 업무구분	계 급	직 무 내 용	임 용 자 격	비 고
			6. 4년제대학 체육학과 졸업자 (체육지도교사에 한함)	
훈련교사	7급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녀자의 생 활개선 제응 및 교양지도 • 직업상담 및 알선 • 여성능력개발 을 위한 연 수교육 • 기타 기술교육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 교사 3급면허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1급 자격 중 소지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2급 또는 기능사 1급 자격중 소지자로서 2년이상 실무경력자 	
사회복지 전문요원	7급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실 태피안 및 지원대책 사업 • 저소득층 복지상담 및 연구조사 	1. 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부녀복지 관 (구로, 아포) 유아교사	8급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로부터 의뢰된 유아 실 아동의 보호 및 교육 	1. 교육법상 교원자격기준의 정교사 1,2 급, 훈교사 자격증 소지자	
6. 위생 및 의료분야				
직 명 (위) 및 업무구분	계 급	직 무 내 용	임 용 자 격	비 고
영 양 사	6급상당	• 입원환자의 급식관리	1.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국·공립병원 또는 대학병원에서 환자급식 관리업 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직명(위) 및 업무구분	제 급	직무내용	임 용 자 격	비 고
	7급상당	·입원환자의 급식관리	1.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동위원소) 방사선 안전관리기사	6급상당	·동위원소처리 ·감마카메라 운영 ·감마카메라 운영	1. 전문대학이상을 졸업하고 방사선 동위원소 취급자 일반면허증과 의료기사(방사선사 또는 임상병리사)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동위원소) 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의료기기수리기사	7급상당	·각종 의료기구, 기기의 관리 및 수리	1. 의료기관에서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의료기수리사에서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뇌파기사	7급상당	·뇌파기로 뇌중추신경의 기질적 변화 검사	1.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국·공립병원 또는 대학병원에서 뇌파검사 실무경력 2년이상인 자 2. 신경정신학회 발급 자격증 소지자 및 교육이수자	
특수교사	7급상당	·미숙아, 지진아 교육교정	1.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	
임상심리사	7급상당	·환자의 무의식적, 의식적 병리현상 분석, 진료자료 제공	1. 임상심리학 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임상심리 전문가 자격 취득자 3. 심리학 전공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임상심리분야 근무경력 2년이상인 자	
7. 위험물 취급분야				
직명(위) 및 업무구분	제 급	직무내용	임 용 자 격	비 고
고압가스관리기사	7급상당 8급상당	·고압가스 안전관리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사 2급 ·고압가스기체기능사 2급 ·고압가스화학기능사 2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시행령 제1조

직명(위) 및 업무구분	계급	직무내용	임용자격	비고
			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시행령 제 11 조 규정에 적합한 자	
위험물 취급주임	7급상당	· 위험물 취급의 보안감독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위험물 취급기능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소방법시행규칙 제 144 조의 규정에 적합한 자	소방법 제 18 조 소방법시행규칙 제 144 조
화약기사	7급상당	· 화약류의 보관 관리	1.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에 의한 1급 화약류관리 보안책임자 면허 취득자	총포화약류단속법 제 26 조

8. 항공사진 관독분야

직명(위) 및 업무구분	계급	직무내용	임용자격	비고
항공사진사	6급상당	· 항공사진 제작	1. 4년제대학이상 졸업자로서 항공 사진 제작분야에서 경력 2년 이상인 자 2.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로서 항공사진 제작분야에서 경력 4년이상인 자 3. 고등학교이상 졸업자로서 항공사진 제작분야에서 경력 6년이상인 자 4. 항공사진 제작분야에서 경력 9년이상인 자 5. 관독사(7급상당)로 2년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다만, 관련학과(전공) 졸업자에게는 경력 기준에서 1년을 감한다. * 관련학과: 토목(공학)과, 측지과, 지적과, 도시공학과, 사진학과, 지리학과	

직급(위) 업무구분	계급	직무내용	임용자격	비고
관독사	6급상당	항공사진관 독 및 해석	1. 4년제 대학이상 졸업자로서 항공사진 관독 및 해석분야에서 경력 2년이상인 자 2.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로서 항공사진 관독 및 해석분야에서 경력 4년이상인 자 3. 고등학교이상 졸업자로서 항공사진 관독 및 해석분야에서 경력 6년이상 인 자 4. 항공사진 관독 및 해석분야에서 경 력 9년이상인 자 5. 관독사(7급상당)로 2년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다만, 관련학과(전공) 졸업자에게는 경력기준에서 1년줄 감한다. * 관련학과: 토목(공학)과, 측지과, 지적과, 도시공학과, 사진학 과, 지리학과	
	7급상당	항공사진관 독 및 해석	1. 4년제 대학이상 관독 및 해석분야 졸업자 2.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로서 항공사진 관독 및 해석분야에서 경력 2년이상 인 자 3.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항공사진 관독 및 해석분야에서 경력 4년이상인 자 4. 항공사진 관독 및 해석분야에서 경 력 7년이상인 자 다만, 관련학과(전공) 졸업자에게는 경력 기준에서 1년줄 감한다.	

9. 공해관리분야				
직명(위) 및 업무구분	계급	직무내용	입 응 자 격	비 고
공해측정장비관리요원	6급상당	· 공해측정기기의 점검, 수리 및 감독 데이터 작성	1. 정규 4년제 공과대학 전기과 또는 전자공학과 졸업자로서 2년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 2. 공업고등학교, 전문대학 전기과 또는 기계과를 졸업하고, 국가기술자격시험령에 의한 기능제자격을 중급중 전기기술분야에서 “전기기기의 기능사 2급”(전기기기 기능사 1급, 전기기기 기능장, 전기기사 1급, 전기기기 2급, 전기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환경관리기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2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4. 전문대학이상 위생(공학)과, 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졸업자로서 4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5.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공해측정장비관리 기술업무에 9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공해관리 및 측정분야 7급상당으로 2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8급상당	· 공해측정기기의 점검, 수리 및 감독 데이터 작성	1. 6급상당 임용자격 1-4호의 근무경력을 제외한 자 2.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공해측정장비관리기술 업무에 5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직명(위) 및 업무구분	계 급	직무내용	임 용 자 격	비 고
공해추정 기사	7급상당	· 공해추정소 운영관리, 데이터작성	1. 환경관리기사 1급 자격증 소지자 2. 환경관리기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이상 국·공립기관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8급상당 공해추정기사로 근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	
	8급상당	"	1. 환경관리기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10. 기타분야				
직명(위) 및 업무구분	계 급	직무내용	임 용 자 격	비 고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운영담당관	4급상당	· 공원운영역 직분 업무 · 공원이용객의 교통대책	1. 4년제대학 졸업자로서 공원분야 행정경력 10년이상인 자 또는 공원업무 7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2. 기타 임용권자가 적격자로 인정한 자	
보라매공원 관리사무소장	4급상당	· 사무소의 업무편장 · 소속공무원의 지휘감독	1. 4년제대학 졸업자로서 공원분야 행정경력 10년이상인 자 · 공원 및 녹지분야 업무경력 7년이상인 자 2. 기타 임용권자가 적격자로 인정한 자	

직명(위) 및 업무구분	계급	직무내용	일용자격	비고
마이크로 필름 촬영기사	7급상당	· 영구보존 문서촬영 및 필름 관리 · 마이크로 필름 촬영보존 관리	1. 축소사진 촬영기능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2. 고등학교이상 졸업자로서 축소사진 업무경력 3년이상인 자	
수의사	"	· 수육동물견반견인 진료와 방역	1.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 2. 야생동물 사육관리 경력이 7년이상 있는 자	
동물훈련관	"	· 조랑말등 동물훈련	1. 농업고등학교이상 졸업자로서 야생동물 사육관리 경험이 4년이상 있는 자 2. 야생동물 사육관리 7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동물관리 시찰 및 교육을 필한 자	
재산관리원	6급상당	· 사유재산중 전물의 재해 복구업무 처리	1. 4년제대학 졸업자로서 당해분야에 상응하는 근무경력 2년이상인 자 2. 고등학교이상 졸업자로서 당해분야 경력 6년이상인 자	
* 상위법 적용을 받는 자격기준의 변경시의 적용 : 분야별 자격기준중 상위법의 적용을 받는 분야는 그 상위법이 개정될 때에는 이 자격기준에 불구하고 상위법의 자격기준에 따른다.				

<p>국무총리의 승인한 일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p> <p>1988년 2월 22일 서울특별시장 김용래 인</p>	<p>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 2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1조의 2 (국외여행) 공무원은 국외에 거주하는 친족의 경조사나 있거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등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p>
<p>◎서울특별시 조례 제 2282 호</p> <p>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p> <p>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 12조 제 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④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상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액을 지급하고 연가에 감응할 수 있다.</p>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국무총리의 승인한 일은 서울특별시 시험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p> <p>1988년 2월 22일 서울특별시장 김용래 인</p>
<p>제 16조 제 4항중 “제 15조의”를 “제 11조의”로 하고, 동조에 제 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⑥별 제 4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이나 별제 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p>	<p>◎서울특별시 조례 제 2283 호</p> <p>서울특별시 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p> <p>서울특별시 시험수당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 1조중 “각 단행본에서 규정된”을 “다른 법령에 규정된”으로 한다.</p>

제 2 조 중 “시험감독관으로”를 “시험감독관으로”로 한다. (별표) 중 “연접 및 실기수당”을 “연접 및 실기시험수당”으로 한다. (별표) 중 “문제선정심사수당관”을 “문제선정심사수당관”으로 하고, “감시수당관”을 “감독수당관”으로 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문제선정심사수당	과 목	액	30,000
감독수당	명 일 (일당)		6,000
	공휴일 (일당)		8,00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군장성소유자동차의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8년 2월 22일

서울특별시장 김용택

◎서울특별시 조례 제2284 호

서울특별시군장성소유자동차의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국군의 전투력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군용에 공하는 군장성(현역에 복무하는 군인사법 제 3 조 규정의 군장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유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면제대상) ①군장성이 군용에 공하기 위하여 법제 196 조의 5 제 1 조 제 1 호 및 제 2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국내에서 조립하거나 생산한 자동차에 한한다) 1 대를 자기명의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군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②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와 대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체처분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를 부과한다.</p> <p>다만, 대체하고자 하는 사유가 자동차의 노후나 사고로 인하여 대체가 불가피하다고 국방부장관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 3 조 (면허기간)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의 과세면제는 1988 년도 정기분 면허세와 1988 년 6 월 30 일까지 면허를 받는 수시분 면허세에 한하여 적용하고, 자동차세의 과세면제기간은 당해자동차를 취득한 날이 속하는 기본분의 1988 년도 제 2 기분까지로 한다. 다만, 과세기간중 연역에서 전역하는 경우에는 그 전역 또는 해입된 날이 속하는 기본분의 자동차세를 지방세법 제 196 조의 8 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p>	<p>제 4 조 (사무처리의 위임)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사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무는 당해 자동차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p> <p>제 5 조 (면제신청등)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세의 과세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유자의 주소, 성명, 소속, 계급 또는 직급 및 호봉과 그 자동차의 종류, 명칭, 제조년도, 기관번호, 기동수, 속간거리, 배기량, 등록번호, 승차정원, 적차장, 취득년월일 등을 기재한 시세 면제 신청과 그 자동차가 군용에 동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임을 증명하는 국방부장관의 확인서를 갖추어 자동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과세면제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군복무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소유자를 데워하여 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p>
---	---

③구청장이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과세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치하여야 한다.

제 6조 (시행규칙) 이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액) 이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취득 또는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조례의 시행일에 취득 또는 등록한 것으로 보아 이 조례를 적용한다.
- ③ (시행기간) 이조례는 1988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택지가격평가심의회운영규칙 제2212호를 이에 공포한다.

1988년 2월 22일

서울특별시장 김용래 인

◎서울특별시 규칙 제 2212 호

서울특별시택지가격평가심의회 설치운영규칙 폐지규칙

서울특별시택지가격평가심의회설치운영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군장성금소유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8년 2월 22일

서울특별시장 김용래 인

◎서울특별시 규칙 제 2213 호

서울특별시군장성금소유자동차의과세면제에관한특별조례시행규칙중폐지규칙

서울특별시군장성금소유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117 호

최고기 및 돼지고기 연동가격

최고기 및 돼지고기 연동가격 시정
에 관한 규정(농림수산부고시 제 85-47
호, '85.8.22) 제 8조 및 제 9조 규
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최고기와
돼지고기 연동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한다.

1988. 2. 22
서울특별시장

1. 최고기 및 돼지고기 연동가격
최고기 연동가격(정육 500그램당)
3,500 원

돼지고기 연동가격(정육 500 그
람당) 1,500 원

2. 시행일: 1988. 2. 20 부터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123 호

제 2 종 전기공사업면허업체영업장지침본

전기공사업법 제 29조 규정에 의거
아래 제 2 종 전기공사업 면허 소지
업체에 대하여 영영정지(88. 2. 12~
88. 3. 15) 처분하고 전기공사업법 제
42조 규정에 의거 공고한다.

1988. 2. 22
서울특별시장

면허번호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조치사항
1068	삼아전통 건설㈜	종로구 와룡동 74	최진희	전기공사업법 제 7 조 위반	전기공사업법 제 29 조에 의거 1 개월간 영영정지 처분(88. 2. 15~88. 3. 15)

◎서울특별시공고제 129 호

제 2 종 전기공사업면허업체면허취소처분

전기공사업법 제 31 조 1 항의 규정
에 의거 제 2 종 전기공사업 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그 면허를 취
소하고 동법 제 42 조의 규정에 의
거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8. 2. 22
서울특별시장

면허번호	업 재 명	소 재 지	대표자	처분내역	사 유
2 품 제 1119 호	효성전기엔지니어링	서울시성북구 월곡동 90-400	이 병 두	면허취소	전기공사업법 제 7 조 위반

◎서울특별시공고제 132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완료

1. 서울특별시고시 제 214 호(87.3.30)로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된 서대문구 대신동 100 번지 일대 연세대학교의 도시계획사업(학교)이 완료되었기에 도시계획법 제 57 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 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8. 2. 22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신동 100 번지 일대

나. 사업의종류: 도시계획사업(학교)
명칭: 연세대학교 국제학기숙사
신축

다. 사업시행면적: 807,019 m²

라. 사업규모: 건축면적 688.27 m²
연면적 3,498.54 m²

마. 사업시행자: 서대문구 신촌동 134 번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장 이 천 환

바. 사업기간: 87.4.19-87.12.30
사. 준공도서: 별첨(생략)

◎서울특별시공고제 133 호

전기용품허가취소처분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 8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용품 허가를 취소처분 하였던 동법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8. 2. 22

서울특별시장

허가번호	상 호	소 재 지	대표자	위 반 내 용	비고
1-10-25	대양자외선	성수 2 가 277-40	표 수 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 7 조 1 항	취소
1-11-60	세원실업	성수 1 가 656-446	문 성 식	"	"

구 공 고

◎**관악구공고제 10 호**

동관인 개 각 사용 승인

우리구 신림 5 동 및 신림 7, 8, 9 동
의 민원사무 전용적인 계인울 개 각
사용 승인하고 구관인 및 계인울 동









일자로 제거하였기 서울특별시 관인
규칙 제 6 조 규정에 의거 공고함

1985. 2. 22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

1. 대상동 : 신림 5, 7, 8, 9 동
2. 사용개시 : 88.2.22 (월) 09:00
3. 폐인일시 : 88.2.20 (토) 13:00


4. **관인의 인영 (민원 사무용)**

인 영	 	 
공인명	신림제 5 동장직인및계인	신림제 7 동장직인및계인
인 영	 	 
공인명	신림제 8 동장직인및계인	신림제 9 동장직인및계인

<p>◎중량구공고제 6 호</p> <p>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p> <p>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 7 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p>	<p>신조 등록하고 통규칙 제 11 조에 의 하여 이를 공고한다.</p> <p>1988.2.22</p> <p>중 량 구 청 장</p> <p>직인등록조서</p>
---	--


직 인 등 록 조 서





회 계 명	일반회계
관서명(국·청·소)	중량구 보건소
직 명	중량구보건소 분임경리관
사 용 개 시 일	1988.1.4

인 영


직 인 등 록 조 서

회 계 명	일반회계
관서명(국·청·소)	중량구 보건소
직 명	중량구보건소 분임지출원
사 용 개 시 일	1988.1.4

인 영


<p>№</p> <p style="text-align: center;"><u>직 인 등 록 조 서</u></p> <p>회 제 명 : 일반회계 관서명 (국, 청, 소) : 중랑구보건소 직 명 : 중랑구보건소 책임재출의 현금출납원 사용개시일 : 1988.1.4</p>	<p style="text-align: center;">인 영</p> 
<p>№</p> <p style="text-align: center;"><u>직 인 등 록 조 서</u></p> <p>회 제 명 : 일반회계 관서명 (국, 청, 소) : 중랑구보건소 직 명 : 중랑구보건소 발품출납원인 사용개시일 : 1988.1.4</p>	<p style="text-align: center;">인 영</p> 
<p>№</p> <p style="text-align: center;"><u>직 인 등 록 조 서</u></p> <p>회 제 명 : 일반회계 관서명 (국, 청, 소) : 중랑구보건소 직 명 : 중랑구보건소 물품관리관 사용개시일 : 1988.1.4</p>	<p style="text-align: center;">인 영</p> 
<p>№</p> <p>보건사회부소관, 국비</p> <p style="text-align: center;"><u>직 인 등 록 조 서</u></p> <p>회 제 명 : 일반회계 관서명 (국, 청, 소) : 중랑구보건소 직 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보건소 분인지출관 사용개시일 : 1988.1.4</p>	<p style="text-align: center;">인 영</p> 

사 령

◎ 1988.2.15

경제 50 호

성 명	발 령 사 항	원 부 서	직 급
장인식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내 무 국	지방별정직 3급상당

경제 54 호

성 명	발 령 사 항	원 부 서
조 성 호	지방별정직 6급상당 (전산처리사) 에 의함. 2 호봉을 급함. 경찰국 면허과 근무를 명함.	실 급
김 두 빈	지방별정직 9급상당 (전산처리사) 에 임함. 4 호봉을 급함. 경찰국 면허과 근무를 명함.	.
김 영 삼	지방별정직 9급상당 (전산처리사) 에 임함. 2 호봉을 급함. 경찰국 면허과 근무를 명함.	.
김 소 연	지방별정직 9급상당 (전산처리사) 에 임함. 1 호봉을 급함. 경찰국 면허과 근무를 명함.	.
조 인 자	지방별정직 9급상당 (전산처리사) 에 임함. 7 호봉을 급함. 경찰국 면허과 근무를 명함.	.
정 영 자	지방별정직 9급상당 (전산처리사) 에 임함. 1 호봉을 급함. 경찰국 면허과 근무를 명함.	.
박 정 미	지방별정직 9급상당 (전산처리사) 에 임함. 1 호봉을 급함. 경찰국 면허과 근무를 명함.	.

성 명	발 명 사 랑	현 부 식
권 인 환	지방별정직 9급상당 (전산처리사)에 임함. 6호봉을 급함. 경찰국 면허과 근무를 명함.	신 주
최 병 대	지방별정직 9급상당 (전산처리사)에 임함. 2호봉을 급함. 경찰국 면허과 근무를 명함.	.
장 면	지방별정직 9급상당 (전산처리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경찰국 면허과 근무를 명함.	.
김 숙 영	지방별정직 9급상당 (전산처리사)에 임함. 1호봉을 급함. 경찰국 면허과 근무를 명함.	.
조 성 연	지방별정직 9급상당 (전산처리사)에 임함. 1호봉을 급함. 경찰국 면허과 근무를 명함.	.
김 미 경	지방별정직 9급상당 (전산처리사)에 임함. 1호봉을 급함. 경찰국 면허과 근무를 명함.	.
이 성 순	지방별정직 9급상당 (전산처리사)에 임함. 2호봉을 급함. 경찰국 면허과 근무를 명함.	.
고 하 영	지방별정직 9급상당 (전산처리사)에 임함. 7호봉을 급함. 경찰국 면허과 근무를 명함.	.
김 명 연	지방별정직 9급상당 (전산처리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경찰국 면허과 근무를 명함.	.
이 상 중	지방별정직 9급상당 (전산처리사)에 임함. 4호봉을 급함. 경찰국 면허과 근무를 명함.	.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고동림	지방별정직 9 급상당 (전산처리사) 에 임함. 3 호봉을 급함. 경찰국 면허과 근무를 명함.	신규	
현경은	지방별정직 8 급상당 (상당원) 에 임함. 1 호봉을 급함. 강동구 근무를 명함.	"	
조효진	지방별정직 8 급상당 (공해측정기사) 에 임함. 7 호봉을 급함. 한강관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	
김진희	지방별정직 7 급상당 (영양사) 에 임함. 1 호봉을 급함. 소방본부 근무를 명함.	"	
정미숙	지방별정직 7 급상당 (영양사) 에 임함. 1 호봉을 급함. 소방본부 근무를 명함.	"	
김희선	지방별정직 6 급상당 (훈련교사) 에 임함. 1 호봉을 급함. 마포부녀복지관 근무를 명함.	"	
조남춘	지방별정직 8 급상당 (훈련교사) 에 임함. 1 호봉을 급함. 마포부녀복지관 근무를 명함.	"	
이기복	지방별정직 8 급상당 (유아교사) 에 임함. 1 호봉을 급함. 마포부녀복지관 근무를 명함.	"	
현현숙	지방별정직 8 급상당 (훈련교사) 에 임함. 1 호봉을 급함. 구로부녀복지관 근무를 명함.	"	
© 1938.2.16 명령 55 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유영식	새마을지도과장 직무대리를 명함.	내무국	지방서기관